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6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6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196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박준범, 김
윤중

피고, 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선우, 김수진, 박종훈, 오
은정, 이보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이동근

판결 선고 2024. 4. 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19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착오 및 착오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권리남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21. 9. 8. 자 준비서면에서 매매대금의 반환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준비서면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